

업계소식 – 고객 소유 기구의 살균과 보관

고객 소유 기구의 사용

이미용위원회(이하 위원회)에서는 때때로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영업장에서 고객 소유의 기구를 사용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영업장에 본인 소유의 기구를 가지져 놓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면허소지자들에게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 고객에게 기구를 사용하기전에는 반드시 캘리포니아 규정집 979 항 (a) (1) ~ (5) 에서 기술된 절차에 따라 살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. 고객이 가지고 온 기구를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살균 처리를 시행하지 않으셨음을 의미합니다.

§ 979.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소독.

- (a) 가위를 제외하고,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, 소독가능한, 모든 기구는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독해야 한다.
- (1) 눈에 보이는 찌꺼기를 제거한다.
 - (2) 비누 또는 세제와 물로 세척한다.
 - (3)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종이 타월로 완전히 기구의 물기를 제거한다.
 - (4) 그런 다음,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, 박테리아, 곰팡이, 바이러스의 살균 효과가 입증된 EPA 등록 소독제에 완전히 담군다.
 - (5) 면허 소지자 또는 학생은 기구를 소독제에서 꺼낼 때 보호장갑을 착용하거나, 집게를 사용해야 한다.
- 참고: 인용 근거: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 참조: 사업 및 전문업법 7312(e) 항.

고객이 가져온 기구의 보관

때때로 어떤 고객은 면허소지자에게 본인의 기구를 영업장 안에 보관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. 그것은 위원회에서 권장하는 행위가 아닙니다. 캘리포니아 규정집 979 항 (d) 에 의거하여, 모든 살균처리된 기구들은 “깨끗한” 또는 “소독한”이라고 라벨을 붙여서 보관해야 합니다.

§ 979.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구의 소독.

- (d) 소독된 모든 기구는 “깨끗한” 또는 “소독한”이라고 라벨을 부착한,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.

이 규정에 대한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첫번째 위반시 - \$100.00

두번째 위반시 - \$250.00

세번째 위반시 - \$500.00

다시 말씀드리지만, 면허소지자는 손톱줄(emery boards)이나 손톱버퍼(buffer)같은 살균처리 불가능한 제품을 두었다가 재사용하면 안됩니다. 이러한 종류의 제품들은 일회용품이며 사용 즉시 폐기 처리해야 합니다. 캘리포니아 규정집 981 항 (a)를 참조하십시오.

§ 981. 기구 및 용품.

(a) 고객의 신체와 직접 닿고 소독할 수 없는 모든 기구와 용품(버퍼, 푸미스 스톤, 왁스 스틱, 발가락 분리대, 장갑, 면패드, 스폰지, 에머리보드, 넥스트립을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는)은 한 사람의 고객에게 사용 후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.

참고: 인용 근거: 사업 및 전문업법 7312 항. 참조: 사업 및 전문업법 7312(e) 항.

이 규정에 대한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첫번째 위반시- \$100.00

두번째 위반시- \$150.00

세번째위반시 - \$200.00

개정 2015 년 7 월